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14. 2. 12.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2월 4일

나. 제출자 : 신흥식 의원 외 4인

다. 회부일자 : 2014년 2월 4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4. 2. 1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신흥식 의원 )

#### 가. 제안이유

-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제4조)
- 구청장에게 주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함께 적도록 함(안 제7조)
-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국민 또는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 보존제수에 이바지한 국민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제정 조례는 국민과 공공기관 등에 올바른 국어의 사용법을 준수하게 하고, 아울러 국어 사용의 촉진과 발전 및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 국어의 발전·보전 및 올바른 국어사용 등을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 국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국어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함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에 공공기관의 공문서나 옥외광고물 등은 한글로 작성 또는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 안 제8조에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국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한글 사용 촉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한글 관련 유공 국민과 공무원의 포상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에도 은어·비속어·인터넷 언어와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등으로 우리의 말과 글이 심각하게 왜곡·훼손됨에 따라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국어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선언적·원고적 내용이지만 민족의 자랑인 한글이 소홀히 취급되어지는 경향을 반성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적극 앞장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 나. 주요골자

-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을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로 하며,
-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  
“시민에게” 를 “국민에게” 로 한다.

####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74
----------	-----------

제안년월일 : 2014. 2.

제출자 : 정선희 위원외 1인

##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 2. 주요골자

-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을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로 하며,
-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  
“시민에게” 를 “국민에게” 로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을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로 하며,
-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  
“시민에게” 를 “국민에게” 로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문서 등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b>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p> <p>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u>시민</u>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li> <li>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li> <li>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li> <li>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li> <li>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 ----- ----- -----.</p> <p><b>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b> ① (원안과 같음)</p>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구</u>민에게 -----</li> <li>2. ~ 5.(원안과 같음)</li> </ol>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신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4
----------	-----

발의년월일 : 2014년 2월 일

발 의 자 : 신흥식의원 외 명

## 1. 제안이유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제4조)

나. 구청장에게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함께 적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  
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구민 또는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  
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4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홍보전산과

라. 자치법규안 : 별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므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분청·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

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영등포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문서 등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74
----------	-----------

제안년월일 : 2014. 2.

제출자 : 정선희 위원외 1인

##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 2. 주요골자

-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을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로 하며,
-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  
“시민에게” 를 “국민에게” 로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을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로 하며,
-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  
“시민에게” 를 “국민에게” 로 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문서 등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b>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p> <p>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u>시민</u>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li> <li>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li> <li>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li> <li>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li> <li>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 ----- ----- -----.</p> <p><b>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b> ① (원안과 같음)</p>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구</u>민에게 -----</li> <li>2. ~ 5.(원안과 같음)</li> </ol>